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
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종호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」이 개정(법률 제20254호, 2024. 2. 13. 공포, 8. 14. 시행)됨에 따라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,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,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6. 3. ~ 7. 15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,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, 제4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지정하는”을 “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 및 제5항”으로, “지정”을 “지정, 지정취소”로 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 기관의 지정) ① ~ ③ (생략)	제4조(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 기관의 지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 관을 <u>지정하는</u> 때에는 그 사실 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	⑦ ----- ----- --- <u>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</u> - -----.
<u><신 설></u>	⑤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</u> <u>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</u> <u>관이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해</u> <u>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</u> <u>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</u> <u>것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</u> <u>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</u> <u>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</u> <u>있다.</u>
⑤ (생략)	④ (현행 제5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⑥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</u> <u>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</u> <u>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</u> <u>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</u> <u>을 해야 한다.</u>
⑥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관연 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<u>지정</u>	⑧ 제1항 및 제5항----- ----- <u>지정,</u>

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.	<u>지정취소</u> ----- ----- -----.
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2 - 4647